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 발생신고 서식과 사망(검안)신고 서식을 통합하여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감염병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- 나.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정 서식 신설
- 다.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을 통한 병원체 취급 시 안전관리 강화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별표1, 별지 제1호의4서식, 별지 제6호, 별지 제6호의2
서식(안)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감염병 발생”을 “감염병(발생 및 사망(검안)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(검안)”을 “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(발생 및 사망(검안))”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감염병 발생 신고서,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(검안) 신고서, 별지 제1호의5서식”을 “감염병(발생 및 사망(검안)) 신고서, 별지 제1호의4서식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본감시기관 지정서를 해당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서를 해당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16조 중 “별지 제6호서식”을 “별지 제7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2제1항 중 “별지 제6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7호의2서식”으로 한

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별지 제7호서식”을 “별지 제8호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7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8호의2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별지 제7호의3서식”을 “별지 제8호의3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7호의4서식”을 “별지 제8호의4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별지 제7호의5서식”을 “별지 제8호의5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8호서식”을 “별지 제9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“별지 제8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9호의2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별지 제8호의3서식”을 “별지 제9호의3서식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9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0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10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1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별지 제11호서식”을 각각 “별지 제12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12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3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별지 제13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4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제1항 중 “별지 제14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5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15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6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지 제14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5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별지 제15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6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3제1항 중 “별지 제15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16호의2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15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6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지 제15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16호의2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별지 제15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6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4제1항 중 “별지 제15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16호의2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15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6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5제1항 중 “별지 제15호의3서식”을 “별지 제16호의3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15호의4서식”을 “별지 제16호의4서식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13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14호의2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13호의3서식”을 “별지 제14호의3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13호의4서식”을 “별지 제14호의4서식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별지 제16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7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별지 제17호서식”을 각각 “별지 제18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별지 제18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9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2제1항 중 “별지 제18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19호의2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18호의3서식”을 “별지 제19호의3서식”으로 한다.

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지 제18호의4서식”을 “별지 제19호의4서식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

제27조의4제2항 중 “별지 제18호의5서식”을 “별지 제19호의5서식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별지 제19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0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전단 중 “별지 제20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1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21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2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31조의6 중 “별지 제21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22호의2서식”으로 한다.

제32조 중 “별지 제22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3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34조 중 “별지 제23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4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2항 중 “별지 제24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5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지 제25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6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별지 제26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7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“별지 제27호서식”을 각각 “별지 제28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2항 중 “별지 제28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9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지 제29호서식”을 “별지 제30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3항 중 “별지 제30호서식”을 “별지 제31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42조의3제1항 중 “별지 제30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31호의2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별지 제30호의3서식”을 “별지 제31호의3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별지 제30호의4서식”을 “별지 제31호의4서식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별지 제31호서식”을 “별지 제32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별지 제32호서식”을 “별지 제33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별지 제33호서식”을 “별지 제34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별지 제34호서식”을 “별지 제35호서식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2호에 저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저. 차파레 바이러스(Chapare virus)

처. 루요 바이러스(Lujo virus)

커. 폴리오바이러스(Poliiovirus). 다만, Sabin type 1, 2, 3 및 WHO에서 승인한 백신주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감염
 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
 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
 경우: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
 염병 발생 신고서

2.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
 사체를 검안한 경우와 같은
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
 신고하는 경우: 별지 제1호의4
 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(검
 안) 신고서

② ~ ⑤ (생 략)

제10조(보건소장 등의 보고) 법
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
 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
 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의
 3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,
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
 자등 사망(검안) 신고서, 별지
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
 과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
 서를 포함한다) 또는 별지 제2
 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
 발생보고서(전자문서로 된 보고

 ----- 감
 염병(발생 및 사망(검안)) ---

2. -----

 ----- 별지 제1호의3
 서식의 감염병(발생 및 사망
 (검안)) -----
 --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보건소장 등의 보고) ----

 ----- 감염병(발생 및 사망(검
 안)) 신고서, 별지 제1호의4서식

서를 포함한다)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,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14조(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·시설·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(이하 “표본감시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〈후단 신설〉

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제16조(역학조사반원증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

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-----

-----.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
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
제6호의2서식의 표본감시기관
지정취소서를 해당 표본감시기
관의 장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16조(역학조사반원증) -----

----- 별지 제7호서식 -----
--.

① _____

별지 제7호의2서식 _____

– 10 –

제18조(고위험병원체 분리, 분양
· 이동 및 이동 신고 등) ① 법
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
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
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
체 분리신고서(전자문서로 된
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별지 제7
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
리경위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
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
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
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
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. 이
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
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고위험병
원체 분리신고 확인서를 신고자
에게 발급해야 한다.

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
험병원체를 분양·이동받으려
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
고위험병원체 분양·이동신고
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
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
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
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

제18조(고위험병원체 분리, 분양
· 이동 및 이동 신고 등) ① --

별지 제8호서식-----

----- 별지 제8
호의2서식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.

별지 제8호의3서식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별지 제8호의4서식-----

야 한다.

1. ~ 6. (생 략)

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
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
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
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. 이
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
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고위험병
원체 분양·이동신고 확인서를
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고위
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
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
병원체 이동신고서(전자문서로
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
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
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
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
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
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. 이
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
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위험병
원체 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
에게 발급해야 한다.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별지 제8호의5서식-----

-----.

⑤ -----

--- 별지 제9호서식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.

별지 제9호의2서식-----

-----.

⑦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고위
 협병원체를 보유·관리하는 자
 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고위협
 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(전자문
 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)를
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
 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9조(고위협병원체 반입 허가
 신청 등) ① 법 제22조제1항에
 따라 고위협병원체의 반입 허가
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
 식의 고위협병원체 반입허가신
 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
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
 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
 제출해야 한다.

1. ~ 5.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
 질병관리청장이 그 허가를 하는
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
 위협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
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
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
 지 제11호서식의 고위협병원체
 반입허가 변경신청서(전자문서

⑦ -----

 -- 별지 제9호의3서식-----

 -----.

제19조(고위협병원체 반입 허가
 신청 등) ① -----

 ----- 별지 제10호서
 식-----

 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 ----- 별지 제11호서식-----

 -----.

③ -----
 ----- 별
 지 제12호서식-----

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④ (생략)

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(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)

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. 이

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별지 제12호서식-----

-----.

제20조(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)

① -----

----- 별지 제13호서식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
별지 제13호서식의 고위험병원
체 인수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
게 발급해야 한다.

제20조의2(고위험병원체 취급시
설의 설치·운영 허가 및 신고
등의 서식) ① 영 제19조의2제3
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
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
같다.

② 영 제19조의2제4항 후단에
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
치·운영허가서는 별지 제15호
서식과 같다.

③ 영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
의 부분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
제14호서식과 같다.

④ 영 제19조의2제6항 후단에
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
치·운영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
15호서식과 같다.

제20조의3(고위험병원체 취급시
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)
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
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
의2서식과 같다.

별지 제14호서식-----

-----.

제20조의2(고위험병원체 취급시
설의 설치·운영 허가 및 신고
등의 서식) ① -----

----- 별지 제15호서식---
---.

② -----

----- 별지 제16호서
식-----.

③ -----
----- 별지
제15호서식-----.

④ -----

----- 별지 제1
6호서식-----.

제20조의3(고위험병원체 취급시
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)
① -----
----- 별지 제16호의
2서식-----.

② 영 제1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서는 <u>별지 제15호 서식</u>과 같다. ③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<u>별지 제15호의2서식</u>과 같다. ④ 영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<u>별지 제15호 서식</u>과 같다. 제20조의4(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) ①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<u>별지 제15호의2 서식</u>과 같다. 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<u>별지 제15호 서식</u>과 같다. 제20조의5(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) ①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서는 <u>별지 제15호의3서식</u>과 같다. ② 영 제1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확인서는 <u>별지 제15호의4서식</u>과 같다. 제20조의8(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	② ----- ----- <u>별지 제16호서식</u>-----. ③ ----- ----- <u>별지 제16호의2서식</u>-----. ④ ----- ----- <u>별지 제16호서식</u>-----. 제20조의4(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) ① ----- ----- <u>별지 제16호의2서식</u>-----. ② ----- ----- <u>별지 제16호서식</u>-----. 제20조의5(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) ① ----- ----- <u>별지 제16호의3서식</u>-----. ② ----- ----- <u>별지 제16호의4서식</u>-----. 제20조의8(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
---	--

의 보유허가 신청 등)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(이하 “보유허가”라 한다)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보유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③ 법 제23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

의 보유허가 신청 등) ① -----

--- 별지 제14호의2서식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별지 제14호의3서식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별지 제14호의4서식-----

다)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
게 제출해야 한다.

1. · 2. (생 략)

④ ~ ⑥ (생 략)

제22조(예방접종증명서) 법 제27
조 및 제33조의4제4항에 따른
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6호
서식과 같다.

제23조(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
작성 및 보고) ① 법 제28조제1
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수예
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
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
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(전자문
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
같다)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
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
자치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
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
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
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
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
고,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
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예방접종증명서) -----

----- 별지 제17호서
식-----.

제23조(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
작성 및 보고) ① -----

--- 별지 제18호서식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별지 제18호서식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)

----- 별지 제19
호서식-----.

[illegible]

② 법 제33조의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·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·수입 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법 제33조의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·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·수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·수입 계획 변경 보고서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27조의3(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) ① 법 제33조의4제5항제3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② -----

----- 별지 제19호의3서식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별지 제19호의4서식 -----

-----.

제27조의3(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5제1항에

5. (생 략) 제27조의4(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) ① (생 략) ②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<u>별지 제18호의5서식</u>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제28조(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) ① (생 략)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<u>별지 제19호서식</u>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 제29조(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)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	<u>다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제27조의4(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 <u>별지 제19호의5서식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. 제28조(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20호서식</u> ---- ----- -----. 제29조(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) ① -----
--	---

는 별지 제21호의2서식과 같다.
제32조(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.

제34조(건강진단 등의 조치) 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(예방접종)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37조(소독업의 신고) ① (생략)
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·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

-- 별지 제22호의2서식-----.
제32조(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) -----

----- 별지 제23호서식-----
-----.

제34조(건강진단 등의 조치) ----

-- 별지 제24호서식-----

-----.

제37조(소독업의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----- 별지 제25호서식-----

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(受理)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제38조(신고사항의 변경) ①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9조(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) ① 법 제53조에 따라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폐업을 신고하

-----.

③ -----

-- 별지 제26호서식-----

-----.

제38조(신고사항의 변경) ① ----

----- 별지 제27호서식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) ① -----

----- 별지 제28호서식-----

-----.

려는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40조(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) ① (생략)

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·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,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41조(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)

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,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

----- 별지 제28

호서식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별지 제29
호서식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 별지 제30호서식-----

-----.

제41조(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별지 제31

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
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42조의3(방역업무 종사명령서
및 임명장) ① 영 제26조의2제1
항 전단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
명령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
과 같다.

② 영 제26조의3제1항 전단에
따른 방역관 또는 같은 조 제2
항 전단에 따른 역학조사관에
대한 임명장은 다음 각 호의 구
분에 따른다.

1. 방역관: 별지 제30호의3서식
2. 역학조사관: 별지 제30호의4
서식

제46조(손실보상 청구) ① 법 제7
0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
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
의 손실보상청구서(전자문서로
된 청구서를 포함한다)에 손실
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로
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
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

호서식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2조의3(방역업무 종사명령서
및 임명장) ① -----

----- 별지 제31호의2서식--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---- 별지 제31호의3서식
2. ----- 별지 제31호의4서
식

제46조(손실보상 청구) ① -----

----- 별지 제32호서식-
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1. 별지 제34호서식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_____

_____ 별

지 제35호서식-----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.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,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. The background is white, and the lines are light gray.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on the page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고위험병원체의 종류(제5조 관련)

1. 세균 및 진균

- 가. 페스트균(*Yersinia pestis*)
- 나. 탄저균(*Bacillus anthracis*). 다만, 탄저균 중 탄저균 스테른(*Bacillus anthracis* Sterne)은 제외한다.
- 다. 브루셀라균(*Brucella melitensis*, *Brucella suis*)
- 라. 비저균(*Burkholderia mallei*)
- 마. 멜리오이도시스균(*Burkholderia pseudomallei*)
- 바. 보툴리눔균(*Clostridium botulinum*)
- 사. 이질균 (*Shigella dysenteriae* type 1)
- 아. 클라미디아 시타시(*Chlamydia psittaci*)
- 자. 큐열균(*Coxiella burnetii*)
- 차. 야토균(*Francisella tularensis*)
- 카. 발진티푸스균(*Rickettsia prowazekii*)
- 타. 홍반열 리케치아균(*Rickettsia rickettsii*)
- 파. 콕시디오이데스균(*Coccidioides immitis*, *Coccidioides posadasii*)
- 하. 콜레라균(*Vibrio cholerae* O1 · O139)

2. 바이러스 및 프리온

- 가. 헤르페스 B 바이러스(Cercopithecine herpesvirus 1, Herpes B virus)
- 나. 크림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(Crimean-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)
- 다.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(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)
- 라. 에볼라 바이러스(Ebola virus)
- 마. 헨드라 바이러스(Hendra virus)
- 바. 라싸 바이러스(Lassa virus)
- 사. 마버그 바이러스(Marburg virus)
- 아. 원숭이포스 바이러스(Monkeypox virus)
- 자. 니파 바이러스(Nipah virus)
- 차. 리프트 벨리얼 바이러스(Rift Valley fever virus)
- 카.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(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; Flexal, Guanarito, Junin, Machupo, Sabia)

- 타. 황열 바이러스 (Yellow fever virus)
- 파.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 (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)
- 하. 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(Tick-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; Central European tick-borne encephalitis virus, Far Eastern tick-borne encephalitis virus, Siberian tick-borne encephalitis virus,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,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)
- 거. 두창 바이러스(Variola virus)
- 너. 소두창 바이러스(Variola minor virus, Alastrim)
- 더. 베네주엘라 이과인 뇌염 바이러스(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)
- 러.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(SARS-CoV)
- 머.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(인체 유래 H5N1, H7N7, H7N9). 다만, 해당 바이러스 중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후보로 인정하는 바이러스(백신 후보주) 제외한다.
- 버.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(1918 influenza virus의 8개 병원성 유전자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influenza virus)
- 서.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(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;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, variant Creutzfeldt-Jakob disease prion)
- 어.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(MERS-CoV)
- 저. 차파레 바이러스(Chapare virus)
- 처. 루요 바이러스(Lujo virus)
- 커. 폴리오바이러스(Poliavirus). 다만, Sabin type 1, 2, 3 및 WHO에서 승인한 백신주는 제외한다.
3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큰 세균, 진균,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하는 병원체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<개정 2023. 7. 27.>

감염병 [] 발생 [] 사망(검안) 신고서

※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1/4)

[수신자] [] 질병관리청장 [] 보건소장

공 통	[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]							
	성명 [] 신원 미상	연락처						
	보호자 성명	보호자연락처						
	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[] 없음	국적 [] 내국인 (국가명:)	[] 외국인 (국가명:)					
	여권번호							
	성별 [] 남 [] 여	직업						
	주민등록주소	[] 거주지 불명						
	감염병환자등의 상태 [] 생존 [] 사망							
	[감염병명]							
	<table><thead><tr><th>제1급</th><th>제2급</th><th>제3급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[]에볼라바이러스병 []마버그열 []라싸열 []크리미안콩고출혈열 []남아메리카출혈열 []리프트밸리열 []두창 []페스트 []탄저 []보툴리눔독소증 []야토병 []신종감염병증후군 (증상 및 징후:) []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 []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[]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[]신종인플루엔자 []디프테리아 []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 병(종류:)</td><td>[]수두(水痘) []홍역(紅瘧) []콜레라 []장티푸스 []파라티푸스 []세균성이질 []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[]A형간염 []백일해(百日咳) []유행성이하선염(流行性耳下腺炎) []풍진(風疹) ([] 선천성 풍진 [] 후천성 풍진) []폴리오 []수막구균 감염증 []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[]폐렴구균 감염증 []한센병 []성홍열 []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(VRSA) 감염증 []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(CRE) 감염증 []E형간염 []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 병(종류:)</td><td>[]파상풍(破傷風) []B형간염 []일본뇌염 []C형간염 []말라리아 []레지오넬라증 []비브리오패혈증 []발진티푸스 []발진열(發疹熱) []쯔쯔가무시증 []렙토스피라증 []브루셀라증 []공수병(恐水病) []신증후군출혈열(腎症候群出血熱) []크로이츠펠트-야콥병(CJD) 및 중크로이츠펠트-야콥병(vCJD) []황열 []댕기열 []큐열(Q熱) []웨스트나일열 []라임병 []진드기매개뇌염 []유비저(類鼻疽) []치쿤구니야열 []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) []지카바이러스 감염증 []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병(종류:)</td></tr></tbody></table>			제1급	제2급	제3급	[]에볼라바이러스병 []마버그열 []라싸열 []크리미안콩고출혈열 []남아메리카출혈열 []리프트밸리열 []두창 []페스트 []탄저 []보툴리눔독소증 []야토병 []신종감염병증후군 (증상 및 징후:) []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 []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[]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[]신종인플루엔자 []디프테리아 []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 병(종류:)	[]수두(水痘) []홍역(紅瘧) []콜레라 []장티푸스 []파라티푸스 []세균성이질 []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[]A형간염 []백일해(百日咳) []유행성이하선염(流行性耳下腺炎) []풍진(風疹) ([] 선천성 풍진 [] 후천성 풍진) []폴리오 []수막구균 감염증 []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[]폐렴구균 감염증 []한센병 []성홍열 []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(VRSA) 감염증 []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(CRE) 감염증 []E형간염 []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 병(종류:)
제1급	제2급	제3급						
[]에볼라바이러스병 []마버그열 []라싸열 []크리미안콩고출혈열 []남아메리카출혈열 []리프트밸리열 []두창 []페스트 []탄저 []보툴리눔독소증 []야토병 []신종감염병증후군 (증상 및 징후:) []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 []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[]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[]신종인플루엔자 []디프테리아 []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 병(종류:)	[]수두(水痘) []홍역(紅瘧) []콜레라 []장티푸스 []파라티푸스 []세균성이질 []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[]A형간염 []백일해(百日咳) []유행성이하선염(流行性耳下腺炎) []풍진(風疹) ([] 선천성 풍진 [] 후천성 풍진) []폴리오 []수막구균 감염증 []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[]폐렴구균 감염증 []한센병 []성홍열 []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(VRSA) 감염증 []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(CRE) 감염증 []E형간염 []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 병(종류:)	[]파상풍(破傷風) []B형간염 []일본뇌염 []C형간염 []말라리아 []레지오넬라증 []비브리오패혈증 []발진티푸스 []발진열(發疹熱) []쯔쯔가무시증 []렙토스피라증 []브루셀라증 []공수병(恐水病) []신증후군출혈열(腎症候群出血熱) []크로이츠펠트-야콥병(CJD) 및 중크로이츠펠트-야콥병(vCJD) []황열 []댕기열 []큐열(Q熱) []웨스트나일열 []라임병 []진드기매개뇌염 []유비저(類鼻疽) []치쿤구니야열 []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) []지카바이러스 감염증 []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병(종류:)						
[감염병 발생정보]								
감염병환자 등 분류	[] 환자 [] 의사환자 [] 병원체보유자	신고일 진단일	년 월 일 년 월 일					
의심증상	[] 없음 [] 있음 (발병일: 년 월 일)							
진단검사	[] 실시 [] 미실시							
비고(특이사항)		[] 검사 거부자						
[보건소 보고정보] * 보건소 보고시에 보건소가 추가로 확인하여 작성합니다.								
진단검사 종류	[] 확인 진단	검사 결과 [] 양성 [] 음성 [] 진행중						
	[] 추정 진단	검사 결과 [] 양성 [] 음성 [] 진행중						
추정 감염지역	[] 국내 [] 국외 (국가명: , 입국일:)							
[신고기관 정보]								
신고기관번호	신고기관명							
주소	전화번호							
진단 의사 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신고기관장 서명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사망원인] ※ (나)(다)(라)에는 (가)와의 직접적·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.			
사 망 · 검 안	(가) 직접사인		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
	(나) (가)의 원인		
	(다) (나)의 원인		
	(라) (다)의 원인		
(가)부터 (라)까지의 사망 원인 외의 그 밖의 신체 상황			
안	수술의 주요 소견		사망일
	해부(또는 검안)의 주요 소견		

신고방법

- 감염병 발생 및 사망(검안)신고의 경우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에 대해서 신고합니다.
다만,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「결핵예방법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,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.
- 의료기관 등 신고 의무자는 **제1급감염병**의 경우에는 **즉시**, **제2급감염병** 및 **제3급감염병**의 경우에는 **24시간 이내**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* 제1급감염병의 경우, 신고서 제출 전에 질병관리청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신고서는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[감염병정보시스템(<https://is.kdca.go.kr>(임시))]를 통해 신고합니다.
- 감염병에 따라 환자 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미 신고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(검사 결과 또는 감염병환자 등 분류정보 등)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야 합니다.
- 관할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신고받거나 집단발생 등의 경우, 신고받은 보건소에서는 해당 감염병별 “관리(대응)지침(감염병 관리 주관 보건소)”을 확인한 후, 이관이 필요한 관리 주관 보건소에 사전 협의(유선) 후 이관 처리합니다.
- 제4급감염병(표본감시대상감염병)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감염병 관련 사망(검안)에 따른 신고의 경우,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과 사망(검안)신고서를 동시에 작성하며, 감염병 발생신고 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(검안)부분만 작성합니다.

작성방법

- [작성 방법]** 발생, 사망(검안) 중 해당하는 신고 종류에 √표하고,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, 사망(검안) 두 곳 모두에 √ 표시를 합니다.
· 공통부분은 발생 및 사망(검안)신고 상관없이 모두 작성합니다.
· 사망(검안) 부분은 각 해당 신고 시에만 작성합니다.
- [수신자]** 해당하는 수신자에 √ 표를 하고,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관할지역명을 작성합니다.
- [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]**
- (1) 성명 특수기호나 공백없이 입력합니다.
외국인의 경우,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, 영문명으로 작성하는 경우,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을 기준으로 성과 이름을 차례대로 영문자 및 대문자로만 작성합니다.
미성년자, 노약자, 심신미약자 등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을 함께 작성합니다.
 - (2) 연락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‘신원미상’에 √ 표를 합니다.
역학조사 등 추후 감염병 대응 절차를 위해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. 필요한 경우 환자의 연락처와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작성합니다.
 - (3)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) 13자리를 적습니다.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‘없음’에 √ 표를 합니다.
 - (4)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작성합니다.
 - (5) 국적 내국인과 외국인 중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외국인의 경우 국적에 해당하는 국가명을 작성합니다.

- 니다.
- (6) 성별 남, 여 중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- (7) 직업 직업명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. “기타”와 같이 업무가 불명확한 직업명의 기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직업이 없는 경우 “주부, 학생, 무직” 중 해당하는 것으로 작성하되, 소속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예: 교사일 경우, 초등학교 교사, 중학교 교사, 학생의 경우, 유치원생,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, 대학원생 등)
- (8) 주민등록주소 주민등록지 기준 주소를 작성합니다. 신원미상이거나 주소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불명 에 √ 표를 합니다.
- (9) 감염병환자등의 상태 신고 당시의 환자의 상태에 √ 표를 합니다. 사망원인이 해당 감염병과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된 경우 ‘사망(검안)’ 신고 내용을 동시에 작성합니다.
- 【감염병명】**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√ 표를 합니다. 동시에 여러 감염병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, 해당하는 감염병에 모두 √ 표를 합니다.
(1) 제1급감염병 중 ‘신종감염병증후군’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.
(2) 제1급감염병,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 중 ‘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’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‘긴급한 예방·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’을 의미하며,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「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」를 참고하여 괄호 안에 감염병명을 적습니다.
- 【감염병 발생정보】**
- (1) 감염병환자등 분류 신고 당시 해당하는 환자 분류에 √ 표를 합니다.
- 환자: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」 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,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
 - 의사환자: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,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
(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이나,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)
 - 병원체보유자: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,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
- (2) 신고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. (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팩스 송신일을 기재,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당일로 자동 설정됨)
- (3) 의심증상 감염병환자등 분류로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임상증상 유무에 따라 √ 표를 합니다.
- (4) 발병일 감염병환자등 분류로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임상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. 병원체보유자인 경우, 기재하지 않습니다.

(4/4)

- (5) 진단검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「감염병의 진단기준」을 참고하여, 감염병환자등의 분류에 따른 근거가 되는 진단검사 실시 여부에 따라 √ 표를 합니다. 검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실시에 √ 표를 합니다.
- (6) 진단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 내리거나 해당 감염병의 의사환자로 추정한 날짜를 적습니다.
- (7) 비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,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거부자에 √ 표를 합니다.

【보건소 보고정보】

- (1) 진단검사 종류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「감염병의 진단기준」의 진단방법 등을 참고하여 확인진단 또는 추정진단 중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확인 및 추정진단 모두 한 경우 모두 √ 표를 합니다. 양성 또는 음성 중 해당하는 검사 결과에 √ 표를 하며, 검사를 실시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, ‘진행 중’으로 √ 표를 합니다.
- (2) 추정 감염지역 국내 또는 국외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√ 표를 합니다. 국외로 추정되는 경우, 국기명 및 입국일을 작성합니다. (체류한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모두 기재합니다.)

[신고기관 정보]

- | | |
|--------------|---|
| (1) 신고기관번호 | 감염병환자등을 신고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의 요양기관 번호를 작성합니다. |
| (2) 신고기관명 | 감염병환자등을 신고하는 신고기관(의료기관, 보건소 등)의 이름(상호명)을 작성합니다. |
| (3) 주소/ 전화번호 | 신고기관(의료기관, 보건소 등)의 소재지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. |
| (4) 진단 의사 성명 |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한 신고기관(의료기관, 보건소 등) 소속 의사의 성명을 작성합니다. |
| (5) 신고기관장 성명 | 의료인이 신고하는 경우 소속된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을, 보건소에서 신고하는 경우 보건소 관할 기관장 성명을 작성합니다(예: 신고기관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보건소일 경우, 신고기관장 성명은 청주시장으로 명기) |

[사망원인]

사망(검안) 신고 시에만 작성합니다.
보건소에서 사망(검안)신고를 하는 경우,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합니다.

제 호

표본감시기관 지정서

1. 기관 번 호:
2. 기관 명 칭:
3. 기관 소재지:
4. 기관 대표자:
5. 지정 연월일: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 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질병관리청장

직인

제 호

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서

1. 기관 번 호:
2. 기관 명 칭:
3. 기관 소재지:
4. 기관 대표자:
5. 취소 연 월 일:
6. 취소 사유: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 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 취소합니다.

년 월 일

질병관리청장

직인